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

◇ 홍보팀

지난 2002년 12월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축산업 등록제가 본격 도입되어 금년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축산직불제도가 마련 중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양계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직불제의 관계

대부분의 양계인들은 축산업등록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축산업등록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법(축산법, 오수분뇨처리법, 가축 전염병예방법 등)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비자 지향의 양계산물 생산,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양계인들에게 보다 발전적인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반면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축산업등록제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미로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축산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는 이로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정부재정에서 보조, 지원하는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축산업등록제를 선결하는 농가만이 친환경 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 축산업 등록제

축산업 등록제는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02.12.26 개정, 공포되었으며 금년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등록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법 등 기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1) 도입배경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 등 선진 축산체계 구



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을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축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등록규모 및 기간

양계업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인 300m²(3천수 규모)이상 농가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농가수중 2.6%, 사육수수로는 98%에 해당한다. 단 기존 종축업·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05.12.26일까지)에 보완해야 하며, 기존 계란집하업 경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시 준수사항

등록시에는 방역·소독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위주로 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부화업은 질병 감염예방을 위해 계사와 격리 설치하여야 하며, 방역·위생을 위해 사람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계란집하업도 소독시설은 물론 기타 구비시설을 갖추어야만 한다.

특히, 가축사육업중 백세미용알 생산업(육용종계↑×산란실용계♀)은 종계업과 같은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운영토록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부화업자는 검정기관에서 확인된 종계 또는 등록한 백세미 농가에서 생산한

알만 부화해야만 한다.

또한, 등록시 최소 계사 면적을 준수해야 하는데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등록시 최소 계사 면적

계 종	축사형태	수당면적	비 고
산란계	케이지	420cm ² /수	
	평사	0.11m ² /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250cm ² /수	100일령까지 사육
	평사	420cm ² /수	
육 계	무창	0.046m ² /수	
	개방	0.066m ² /수	

4) 기타

축산등록제 실시를 앞두고 지난달 설명회를 갖기로 했던 계획들이 낙농가들의 도입 반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료를 보완하여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인데 농림부에서는 기존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법 규정에 의한 제재로 범법자가 양성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아래 무허가 축사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건축법 등 타 법에 의한 위법상태는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차후 양성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등록 농가는 모든 정책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되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을 허용키로 하는 등 등록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등록제 참여농가는 친환경직불제 등과도 연계하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농가 등록정보는 타용도 사용이 금지되며 농장고유번호 부여

및 D/B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친환경축산직불제

농림부는 환경규제강화 및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와 가축질병 발생, 수입 사료 의존, 축산분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환경친화적 선진국형 축산(환경 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동물복지 등)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내년 시범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보완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친환경축산직불제란?

친환경축산직불제란 정부가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정부 재정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2) 친환경축산프로그램(지급요건)

닭은 충분한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밀식 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 악화, 질병발생 증가 및 분뇨집중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기준으로 20%정도 강화된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실례로 육계(개방계사)의 경우 축산업등록 기준은 마리수당 0.066m²인데 친환경축산직불제에서는 0.079m²로 강화된다.

3) 준수사항

축분(계분)은 자가보유 또는 임대 농지에 환원, 판매, 무상제공 등으로 처리하되 처리방법·양·시기 등을 농가가 기록하고 점검기관이 확인한다. 또한 체내 잔류방지를 위해 출하전 일정기간 동안 항생제 등의 투약을 중단해야 하며 참여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환경·위생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분뇨(계분)의 처리내용 및 경로, 조사료생산 및 활용 등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일지로 작성해야 한다.

4)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수준

축종에 관계없이 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는데 닭의 경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

며, 친환경축산을 위하여 농가가 소득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 지급기준 : (등록제 기준 사육수수 × 20%) × 수당소득 × 0.5

대상농가는 한우, 젖소, 돼지, 닭 희망농가로
하되 축산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축산환
경 직불제에 참여할 정도면 등록의 요건을 충
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시행방안

농림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방안을 공청회,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계**

음수소독 살균소독 세척소독 악취 및 해충란 제거

3. 투표권

● 놀라운 음수소독 효과

- 유효성분이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효과가 우수해 음수소독시설사병, 만성호흡기질병의 예방은 물론 적절한 사용의 경우 치유효과가 있으며, 사료효율의 증대와 가스억제, 항생제 사용 절감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성 고이

-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주)한성바이오컴

본사 문의전화 : (043)532-0700
홈페이지 : www.hsdrg.co.kr

● 간결하고 광범위한 살구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미ONYX 미생물연구소 등

● 가려하 치트려고 세척려

- EPA 5% 혼용테스트 토과 윤스라이니풀 마히 해경

● 견습내구성과 지속효과

- CaCO_3 750ppm 이상 흐과전 아전하되 악기배치 흐하고조

아침 미 해초이 으뜸라 제거

- 탈취호과 및 아침원이균 산면 유품라 산축호과